

술 품질인증제도

서수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도입 배경 및 경과

세계 각국은 대부분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생산하는 술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영국의 위스키, 프랑스의 포도주, 일본의 사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우리나라 술 산업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술 산업의 특성은 첫 번째로 수입 의존적인 술 시장을 들 수 있다. 국내산은 저가(소주, 맥주)이고 수입산은 고가(와인, 위스키)라는 인식과 함께 고급술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술 산업 육성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술 관리는 세관관리에 초점을 두고 품질이나 위생 등은 등한시하였으며, 제조·유통과정에 규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양주 문화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입국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양조장 막걸리가 대세를 이루게 되자 우리 술 산업은 점차 쇠퇴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대부분 술 제조 원료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소주, 맥주, 탁주(막걸리) 등 대중주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농산물은 대부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술 생산을 국내산 농산물로 사용하여 제조 생산하는 술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경우 술 산업 발전이 우리 농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생산하는 대표적인 술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생산하는 술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른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주 육성으로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술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술 품질인증은 먼저 국세청에서 시작하였다. 2009년 5월 25일 국세청에서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16호, '09.5.25) 제정 시행으로 2개 주종(과실주, 약주)을 대상으로 일괄 품질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84개 제품(과실주 43, 약주 41)에 대해 품질인증서를 교부('09.10.28.) 하였다.

그 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09.8.26.)하여 술 품질인증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품질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술 산업 진흥을 위해 기획재정부(국세청)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을 고유기능에 맞게 재정립 하기로 한 바, 당시 국세청에서 시행 중이었던 '주류품질평화' 및 '주류품질인증제'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술 품질인증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2010.2.4. 제정·공포하고 2010.8.5. 시행하게 된 것이다. 동 법률 제22조 제1항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술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제2항에는 품질인증 대상품목·표시방법·인증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10.8.4. 제정하여 2010.8.5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0.8.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질인증 대상품목(주종)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그 대상은 우선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으로 하였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2010.10.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술 품질인증의 본격 시행을 위하여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시행: '10.10.11)」,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 실시 요령(시행: '11.1.1)」, 「술 품질인증기준(시행: '11.1.1)」을 제정 고시하였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인증기준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10.10.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정 고시한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의거 한국식품연구원이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2010.12.31. 술 품질인증기관 제1호(가)로 한국식품연구원(술 인증센터)을 지정하였다.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식품연구원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 실시 요령」과 「술 품질인증기준」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술 생산업체로부터 술 품질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품질인증서를 교부(품질인증 마크사 용 가능)하는 술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원 등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술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인증품 성가제고 등을 위한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활한 사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1.2.11.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을 제정 고시하여 시행함으로써 술 품질인증제 시행관련 제도를 완벽하게 되었다.

술 품질인증제도의 정의 및 주요내용

‘술 품질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업체가 신청한 술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그 인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술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은 술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2010.8.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일주 등 4개 품목이나, 향후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술 품질인증 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주세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술의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는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품질인증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 심사 및 품질인증서 교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품질인증서 교부 후 인증품의 생산 유통에 따라 품질인증기준 적합성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하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증서가 발급되고 품질인증품이 생산 유통되면 인증품의 성가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를 방문하거나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표시사용정지 처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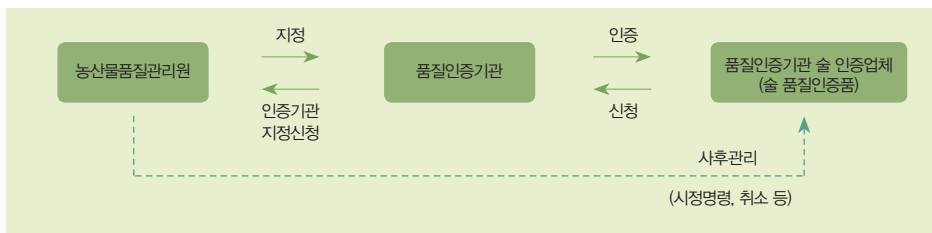


그림 1. 술의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

술 품질인증 절차 및 인증품 현황

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신청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등을 품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관련)를 납부하여야 한다. 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제품 설명서,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신청제품 주상표 및 보조상표 등이다.

품질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게 되며 적합한 경우 인증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인증심사는 신청서류 확인,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 제품심사 순으로 실시되 각 단계별 심사에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제조방법 및 제조장기준·제품 품질기준의 판정기준은 술 품질인증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29호)에 따른다. 탁주(막걸리)의 경우에는 총 4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제조방법기준 5개 항목은 모두 적합하여야 하고 제조장기준은 필수기준 10개 항목 모두와 권장기준 7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이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항목도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질기준을 보면 이화학적 품질기준(주요 7개 항목 및 기타)은 모두 적합하여야 하고 관능평가기준(13개 항목)은 세부항목별로 5점 만점에서 2점 이하 항목이 없어야 한다(표 1).

표 1. 술의 품질인증 적합 판정기준

구분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	제품의 품질기준
종류	탁주 (막걸리) : 44항목	필수기준 10개 항목 모두와 권장기준 7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이 적합(총 82.4%)하여야 하며, 기타 항목은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화학적 품질기준(주요 7개 항목 및 기타)은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관능평가기준(13개 항목)은 세부항목별로 5점 만점에서 2점 이하 항목이 없어야 한다.
	약주 : 46항목	필수기준 12개 항목 모두와 권장기준 7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이 적합(총 84.2%)하여야 하며, 기타 항목은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화학적 품질기준(주요 8개 항목 및 기타)은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관능평가기준(14개 항목)은 세부항목별로 5점 만점에서 2점 이하 항목이 없어야 한다.
	청주 : 45항목	필수기준 12개 항목 모두와 권장기준 7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이 적합(총 84.2%)하여야 하며, 기타 항목은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화학적 품질기준(주요 7개 항목 및 기타)은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관능평가기준(12개 항목)은 세부항목별로 5점 만점에서 2점 이하 항목이 없어야 한다.
	과실주 : 43항목	필수기준 9개 항목 모두와 권장기준 7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이 적합(총 81.3%)하여야 하며, 기타 항목은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화학적 품질기준(주요 7개 항목 및 기타)은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관능평가기준(12개 항목)은 세부항목별로 5점 만점에서 2점 이하 항목이 없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각 단계별 인증심사결과보고서(심사표 등)를 보고받은 결과 적합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며, 인증심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이상의 심의관을 정하여 인증기준의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적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의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한 결과 심사과정의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다른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단계에 대하여 추가 보완심사를 하도록 하며 심의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재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한 결과 적합인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며 수출 등을 위하여 영문으로 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도 발급한다. 만약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 준다. 인증번호는 인증기관 기호(가, 나 등)와 인증기관별 품질인증 누계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또한,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품목의 심사 결과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국내산 농산물을 100%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품질인증서 발급 시「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농식품부 고시 제2010-77호)」의 제3호 나목에 따라 “나”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2).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표지’, ‘인증기관 기호’, ‘인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현재는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법을 개정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정기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세청에서 2009년도에 과실주·약주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 인증표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술 품질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18일 처음으로 4개 공장 6개 제품이 인증되었으며, 그 후 수시로 인증심사를 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9개 공장, 49건(탁주 45건, 약주 1건, 과실주 3건)의 인증서가 발급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술 품질인증을 받은 공장이 있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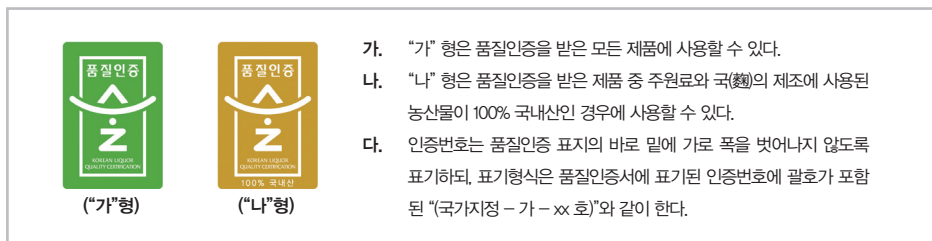


그림 2. 인증표시(농식품부 고시 제2010-75호 관련)

표 2. 지역별 술 품질인증 현황('11.12.31. 현재)

지역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증건수	14	1	6	3	6	12	4	2	1
공장수	6	1	3	2	4	7	3	2	1

주) 경북은 대구 1건, 경남은 울산 1건이 포함되어 있음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위반 시 벌칙 적용

술 품질인증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인증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받은 것인지, 인증품 생산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증품의 품질은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유통이 되고 있는지 등을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고시 2011-7호, 2011.2.11.)」에 따라 조사하게 된다. 우선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된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은 연 1회 이상 인증품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인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보관 상태,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품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및 허위 또는 유사 인증표시 사용 여부,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유해물질 및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잔류성 여부, 기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생산과정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조치를 받게 된다. 인증위반 시 가장 무거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표시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등이 있다. 다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것은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것은 품질인증 관련 자료를 3년 동안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열람·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표 3.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표시 사용정지 1개월	표시 사용정지 3개월	표시 사용정지 6개월
나.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표시 변경	표시 사용정지 1개월	표시 사용정지 3개월
다.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8조 제1항	표시 사용정지 3개월	표시 사용정지 6개월	표시 사용정지 9개월

경우, 품질인증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또한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등에는 표시 변경이나 표시 사용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표 3).

술 품질인증제 시행 기대효과

술 품질인증제의 도입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술 제조 생산업체의 시설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통한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 및 양조기술이 향상되어 갈 것이다. 둘째, 그동안 술에 대한 제품정보가 부족하였으나 품질인증 술에 대한 제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되고 선택권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품질인증 술의 판매촉진으로 생산업체의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대부분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 술 제조 생산 시 국내산 원료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농산물 사용 촉진으로 국내 생산농가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술 품질인증제를 통하여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와 양조기술 향상, 제품정보 제공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선택권 제공, 술 생산업체의 경영개선, 우리농산물 사용촉진으로 생산농가 소득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술 산업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